

위험

부정수급 사이렌

[2026-05호]

“자율안전확인 신고품인 것 처럼 속인...” 수입업체 다수 적발

[CASE] 위험사례

수입업체가 목재가공용기계 자율안전확인신고(KCs)한 형식과 달리 **모터 용량 등을 속여 허위·미신고** 제품을 판매, **사업장은 자율안전확인 신고하지 않은 기계로 보조·지원 받은 부정당 행위** 적발

※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중 신고를 받지 아니한 기계는 산업재해예방 활동의 보조·지원 불가

[SCHEME] 부정수법

1. 신고된 형식(모델)의 기계·기구인 것처럼 명판에 **허위·거짓**으로 KCs, 모터 용량 등 표시
- 실제, **신고된 형식(모델)**과 구동모터 용량 등 주요 구조부분이 **다른 기계·기구**를 사업장에 판매
2. 사업장은 **허위·거짓** 공모 또는 가담하는 등의 방법으로 **미신고 기계·기구로 보조금 수급**(가능성)

[점검 사항]

자율안전확인 신고서(류)의 주요 내역과 사업장에 투자된 기계·기구의 명판(제조업체명, 형식명, 모터 용량, KCs 등), 주요 구조부분 등을 확인 → 허위·미신고품은 지방고용노동관서, 산업안전보건인증원으로 통지

[RISK] 행정처분

- (환수) 지급된 보조금 전액 및 이자 환수
- (추가환수) 거짓·부정은 지급된 보조금의 5배
- (참여제한) 향후 5년간공단 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
- (형사고발) 보조금 편취를 위한 고의성 및 기망 행위 시 형법 제347조(사기) 및 공공재정환수법 제28조의2에 따라 형사고발 및 처벌 가능

<부정수급 신고방법>

- 산업안전포털 홈페이지 (<https://portal.kosha.or.kr/>)

고객센터



민원질의하기



부정행위신고

